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재의 요구안

의안
번호 858

제출년월일 : 2004. 5. 21.
제출자 : 고성군수

2004년 5월 3일 고성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① 위원회의 설치 목적과 기능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위반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장애인복지법 제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등 법령의 규정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를 포괄하여 사회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임.
- 그러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설치 목적 및 기능을 살펴보면,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시·군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는 위원회로, 의결 기능은 없는 위원회이나 조례안 제1조의 규정에서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는 생활보장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시 · 군에 두도록 하고 있는 위원회로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서 그 세부적인 기능들(심의 ·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단서 규정에서 “사군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대신할 위원회의 위원자격이 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자격과 같고 법령에서 위임한 위원회의 기능이 같은 경우에 그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임.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심의 · 건의를 목적과 기능으로 하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에 법령에서 위임
없이 조례로 의결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며,

사회복지위원회의 위원 자격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의 자격요건과도 같지 아니하고, 심의 · 건의 기능을 가진 위원회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서 생활보장 등에 관한 심의 · 의결
기능을 갖추어야 하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
다 할 것이므로 위법한 조례이며,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4조의 규정에서 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서 시 · 군 · 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법령에 의거 설치하면 되는
것을 법령의 위임도 없고 법령상 규정된 위원회 기능범위를 벗어난 내용으로
지방보육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례의 제정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 할 것임.

② 분과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의 기능 수행불가

- 본 조례안은 제1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및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령의 어느 규정에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데도, 조례의 규정에서 임의로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임하여 그에 가능하도록 하였음에도 다시 조례의 규정으로 분과위원회 같은 하위 위원회를 설치하여 그 기능을 달리 하고 있음은 법령의 위임 범위와 그 한계를 초과하게 됨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조례의 제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한 조례임.

붙임 :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11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영유아보육법 제4조, 의료급여법 제6조, 아동복지법 제6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7조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사회복지통합기금운용에관한사항 심의·의결
 2. 사회복지 주요사업에 대한 연구·조정·건의·정책 및 제도도입
 3. 사회복지에 관한 기본계획 및 종합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②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생활보장분과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계획 및 사업계정 운용에 관한사항
 - 나.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자활공동체지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용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
 - 다. 장애인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제도 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마. 노인복지기금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바. 노인복지시책 건의·개발 및 연구
 - 사. 생활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 아.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

- 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2. 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여성복지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나. 여성발전기본법과 관련된 여성정책 개발·연구
 - 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및 조사실시에 관한 사항
 - 라. 아동의 육성 및 보호에 관한 사항
 - 마.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 3.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가.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
 - 나. 의료급여 일수의 연장 승인에 관한 사항
 - 다. 의료급여사업계정 운용에 관한 사항
 - 라.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3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선한다.

②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생활보장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장애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3. 노인복지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 4. 대한노인회고성군지회에서 추천하는 노인대표
- 5.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 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④여성·아동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 1.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여성대표

2. 여성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여성정책개발 능력이 있다고 판단 되는 자
 3.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 대표, 보호자 대표
 4.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 ⑤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자

제4조(위원의 임기) 생활보장분과위원회, 여성·아동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의료급여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분과위원장등의 직무는 동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 분과위원회로 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1/3이상 위원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③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 소집한다.
- ④위원회(분과위원회 포함)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 ①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의 간사는 사회복지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사회복지담당자가 된다.

②분과위원회의 간사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의 기금 계정별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기금계정별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실비지급)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개정) 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제3조제9호 및 제14호는 삭제한다.
- ③(다른 위원회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고성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 고성군아동위원회, 고성군보육위원회, 고성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 고성군생활보장위원회는 각각 폐지한다.